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-260호(2007.7.30.)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,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024.6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501호(2026.09.10.)로 결정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서울특별시장

[1]. 정정사유

-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결정 고시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501호, 2026.09.10.)된 용도지역 및 교통시설 조서, 일부 내용에 오타 등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

[2]. 정정내용

II. 세운재정비촉진계획

13.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: 정정

다. 정비계획 결정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(정정 전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-	증) 5,214.3	5,214.3	98.6	-
중심상업지역	5,286.6	감) 5,214.3	72.3	1.4	도로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(정정 후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중심상업지역	-	증) 5,214.3	5,214.3	98.6	-
일반상업지역	5,286.6	감) 5,214.3	72.3	1.4	도로

3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(1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(가) 교통시설

㉠ 철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994.06 (1.089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749.3 (451.7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42.5 (944.9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15. 지구단위계획 : 정정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
(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(정정 전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일반상업지역	-	증)5,214.3	5,214.3	98.6	-
중심상업지역	5,286.6	감)5,214.3	72.3	1.4	도로

■ 용도지역 결정조서(정정 후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5,286.6	-	5,286.6	100.0	-
중심상업지역	-	증)5,214.3	5,214.3	98.6	-
일반상업지역	5,286.6	감)5,214.3	72.3	1.4	도로

2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(1) 교통시설

㉞ 철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55.86 (948.1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749.3 (451.7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42.5 (944.9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(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

㊤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(정정 전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개방형 녹지	대상지 전면 (차량출입구, DA등 제외)	- 조성계획 : 대상지 동, 서, 남, 북측 녹지 조성 - 면적 : 2,407.4㎡(대지면적의 40%이상 확보) - 유지관리 :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(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)	결정도 참고

※ 개방형녹지는 「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」(‘25.06) 준용

※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,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(공개공지)형상 등은 조정 가능

㊤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(정정 후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개방형 녹지	대상지 전면 (차량출입구, DA등 제외)	- 조성계획 : 대상지 동, 서, 남, 북측 녹지 조성 - 면적 : 2,470.4㎡(대지면적의 40%이상 확보) - 유지관리 :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(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)	결정도 참고

※ 개방형녹지는 「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」(‘25.06) 준용

※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,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에 녹지(공개공지)형상 등은 조정 가능

16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정정

나.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
1) 교통시설(변경)

(2)철도 : 정정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903.56 (595.8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55.86 (948.1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■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정정 후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2	철도	고속철도	벽제~양재동간	40.7km (310)	(3,479)	건설교통부고시 제53호 (‘80.02.22.)	3호선
기정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5,749.3 (451.7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변경	5	철도	도시철도 (을지로3가역 정거장)	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	206	6,242.5 (944.9)	서울시 고시 제46호 (82.02.03.)	-

※ ()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

[3]. 그 외 사항은 정정 내용 없음

[4]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02-2133-4649) 및 중구청
도심정비과(02-3396-5756)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